

교육혁신원 규정

[전문개정 2017.11.21.]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실천에 필요한 대학교육 혁신모델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교육혁신원의 기능과 조직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교육혁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고등교육정책 및 대학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반 연구
2. 대학교육 혁신 모델 연구 및 확산
3. 수요자중심 교육과정 개발지원 및 성과관리
4. 학생중심, 역량기반 교수·학습 지원체계 확립
5. 기초학습능력 및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
6. 비교과 학생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
7. 기타 대학교육 혁신과 관련한 사항

제3조(직제) ① 교육혁신원은 제2조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직제를 둔다.

- ② 교육혁신원에 원장과 직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부원장을 둘 수 있다.
- ③ 교육혁신원장 및 부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교육혁신원은 필요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, 연구원, 연구원보, 조교를 둘 수 있다
- 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로 하며 임용은 본 대학교의 교수임용 절차에 따른다.
- ⑥ 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(졸업예정)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
- ⑦ 연구원보는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.
- ⑧ 연구원 및 연구원보는 교육혁신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⑨ 연구원과 연구원보의 임용은 본 대학교의 직원임용규정에 따른다.
- ⑩ 조교의 임용은 본 대학교의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사업보고) 교육혁신원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2장 교육과정 관리

제5조 (내용) 교육혁신원은 교과, 비교과 교육과정의 성과를 분석하며,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. 교육과정 관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교육혁신원은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(교과, 비교과과정)이 핵심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관리한다.
2. 교육혁신원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(교과, 비교과과정)의 핵심역량 효과성을 검토하여 학과(부) 및 교내 각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받은 기관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3장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)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, 학생처장, 평가지원실장, 교육혁신원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, 경력개발센터소장, 창업지원센터소장, 학생상담센터소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이 된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간사는 교육혁신원 직원으로 한다.

제7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혁신원 제반 업무 및 추진사항
2. 기타 교육정책 및 교육품질관리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

제8조(협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.

1. 교수학습개발센터 제반 업무 및 추진사항
2. 경력개발센터 제반 업무 및 추진사항
3. 학생상담센터 제반 업무 및 추진사항
4. 창업지원센터 제반 업무 및 추진사항
5. 기타 각 센터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

제9조(심의 및 시행)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시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. 위원장은 투표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3.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.

제10조(회의록)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하며, 위원장이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.

제11조(비밀유지) 운영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들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제4장 교육혁신연구위원회

제12조(구성) ① 고등교육정책 및 대학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반 연구를 위해 교

육혁신연구위원회(이하 “연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연구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학생상담센터장, 경력개발센터장, 창업지원센터장, 교양학부장, 교육혁신원 산학협력중점교수 외에 총장이 임명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이 된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연구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3조(소위원회) ① 교육혁신연구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 연구, 교육품질 관리, 교육 혁신 모델 개발 연구,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원 연구, 기타 연구 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혁신연구위원 중에서 교육혁신연구위원장이 배정한다.

제14조(보고) 교육혁신연구위원장은 교육혁신연구위원회의 연구 결과가 교육과정에 반영 되도록 총장에게 보고해야한다.

제5장 교육혁신자문위원회

제15조(구성) ① 교육혁신원의 효율적인 운영, 연구개발,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교육혁신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회는 교육정책과 교육혁신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약간 명과 외부 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교육혁신원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③ 외부 전문가에는 대학, 지역사회, 산업체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포함되도록 한다.

④ 자문위원회는 교육혁신 업무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대표를 참여시킨다.

⑤ 자문위원은 교육혁신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6조(회의) ① 교육혁신원장은 교육혁신원 제반 업무에 대해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교육혁신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제반 의견들 중 교육혁신원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.

제17조(세칙) 기타 교육혁신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폐지는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에 의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